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김도읍・구자근・강승규

신동욱 • 조지연 • 유용원

권영세 • 김성원 • 정점식

장동혁 • 유상범 • 김석기

김미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시행령은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에 지원되는 생활조 정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에서 공 제하고 있으나, 그 외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의 보상금, 무공수훈자, 6·25전몰자녀수당 등에 대한 보훈급여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는 생계급여가 낮게 책 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 고 있음.

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, 국가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·공헌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로서 소득산정 공제가 필요함. 아울러,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하고 영예(榮

譽)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기준 및 종류를 정할 때에는 보훈대상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,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·보장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헌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함(안 제4조제5항 신설, 안 제6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의 기준 및 종류를 정할때에는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 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한 요인"을 "위한 요인, 국가보 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금, 수당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·보장을 위한 요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급여의 기준 등) ① 이 법	제4조(급여의 기준 등) ①
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	
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	
는 것이어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의 기
	준 및 종류를 정할때에는 국가
	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
	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하
	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・보장
	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이
	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
	들어야 한다.
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	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
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	
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	
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	
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	
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	
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	
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	
·질병·양육 등 가구 특성에	
따른 지출요인, 근로를 유인하	

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하여 산정한다.

기 위한 요인, 그 밖에 추가적 위한 요인, 국가보훈 관계 법령 에 따른 보상금, 수당 등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 ·보장을 위한 요인 -----

- 1. ~ 4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③ (현행과 같음)